
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13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27.

발 의 자 : 서삼석 · 김동아 · 이원택
박용갑 · 문대림 · 임호선
윤준병 · 조계원 · 문금주
정을호 · 위성곤 · 이개호
안도걸 · 서미화 · 허영
조인철 · 이병진 · 양부남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·시행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(이하 “초과생산량”이라 함)이 생산량의 3%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또는 그 외의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% 이상 하락한 경우 등에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하여금 미곡의 초과생산량에 대한 차이만큼 매입하게 할 수 있음.

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, 벼 재배 면적을 줄일 계획으로, 선제적인 시장격리 즉,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.

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쌀 1포대 당 목표가격을 21만원 4천

원수준으로 규정했지만, 2023년 이후 목표가격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20만원이 넘자마자 비축물량을 공매하겠다고 발표함.

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이후 규정한 쌀 목표가격을 6여년이 경과한 2025년까지 단 한번도 설정하지 않음.

이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임의적으로 추진했던 현행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를 통해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하는 한편, 쌀 목표가격을 매년 설정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6조 등).
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확보함으로써”를 “확보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과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미곡과”를 “미곡·밀·콩과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공공비축양곡의 목표가격 설정 및 그 가격에 도달·유지 방안

제16조제4항 본문 중 “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”을 “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등으로 하여금”으로, “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”를 “생산량(이하 이 조에서 “초과생산량”이라 한다)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”를 “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미곡을 매입할 때 미곡 가격 안정을 위하여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”으로,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”을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”으로, “수요량을 초과하

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”을 “초과생산량 이상을”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
2. 제1호 외의 요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100분의 5 이상 하락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<u>확보함으로써</u>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확보하고</u> 생산 <u>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</u> <u>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</u> <u>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제고</u> <u>하고 농업의 지속가능과</u> ----- ----- --.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2. (생 략) 3. “공공비축양곡”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<u>미곡</u>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. 4. ~ 7. 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미곡 · 밀 · 콩과</u> ----- -----. 4. ~ 7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	제3조(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

수립) ① (생 략)

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3. (생 략)

<신 설>

4. (생 략)

③ · ④ (생 략)

제16조(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) ① ~ ③ (생 략)

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.

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공공비축양곡의 목표가격 설정 및 그 가격에 도달·유지 방안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등으로 하여금 -----생산량(이하 이 조에서 “초과생산량”이라 한다)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. -----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미곡을 매입할 때 미곡 가격 안정을 위하여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----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

